

(1) 관련 법규 및 근거

(가) 교육공무원법 제41조

※ 교육공무원법 제41조 (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)

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.

(나)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

※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(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)

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
(다)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(교육부 예규)

※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제5항

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, 인정범위 및 절차 등은 교육감(국립은 총장 또는 교장)이 정하도록 한다.

(2) 기간: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업일에 실시함

(3) 국외 자율연수 인정 범위

- 각종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현장연수
- 해외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
- 현지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 · 수강
- 국외 현지에서의 교수학습자료 수집 등

(4) 국외 자율연수 승인 절차



(가) 개인별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 제출([서식IV-17] 참조): 연수계획서 포함 내용: 제출자, 연수 희망국, 연수기간, 연수목적, 활동계획, 기대되는 성과, 연수 중 연락처 또는 연락 방법 등

(나) 나이스 복무 및 계획서 상신

- ① 근무상황: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
- ② 사유 또는 용무: 국외자율연수
- ③ 국외자율연수 계획서는 나이스 상신시 첨부파일로 탑재

(다) 학교장(교육장)의 연수계획서 확인 및 승인: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학교장에게(학교장의 경우 직급 상급기관에) 승인을 받아 실시

(라) 연수의 실시